

# 채무조정 요청절차 및 방법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권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 됩니다.

## 1. 요청대상

### ■ 대상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에 차량을 반납 후 잔여채무가 있는 고객

###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 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 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위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에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 하여야함.

### 3. 채무조정 절차 및 방법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금융회사)	(채무자)	(금융회사)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음.

####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는 경우

- 1)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3)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4)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5)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6)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 ■ 공적채무조정 지원 제도 안내

당사 채무에 관하여 신청가능한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현재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 중인 고객

####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상환유예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자 또는 연체 우려자
2. 지원방식 : 6개월 간 원리금 상환 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

####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이자감면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2. 지원방식 :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최장 10년 분할상환

#### ■ 프리워크아웃 → 원금·이자감면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지원방식 :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 상기 제시된 채무조정의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https://www.ccrs.or.kr/main.do> )

### [법원 채무조정]

#### ■ 개인회생 제도

1. 지원대상 :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2. 지원방식 :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 ■ 개인파산 제도

1. 지원 대상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자
2. 지원 방식 :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상기 제시된 법원 채무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절차안내 [개인파산/회생] 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